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5343
----------	------

제출일자 : 2019.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요구이유

-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위탁(재계약) 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운영 개요

- 명 칭 :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구역 : 동구, 서구, 북구
- 위탁시설 현황
 - 소재지 : 북구 연암로25길 12-1(산격동)
 - 설치일 : 2016. 4. 14.
 - 규 모 : 161㎡(사무실, 상담실, 심리치료실, 회의실, 진술녹화실 등)
 - 인 력 : 15명(관장, 상담원 12, 심리치료사, 사무원)
 - 기존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SOS어린이마을('16. 4. 14. ~ '19. 4. 13.)
- 사 업 비 : 623백만원('19년 기준, 국비 50%:시비 50%)

나. 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4. 14. ~ 2023. 12. 31.(5년 이내)
- 수탁기관 선정 :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위탁 주요사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
- 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6조
-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2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1조

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재위탁(계약) 계획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기존 운영 법인에 대한 평가 후 재계약을 통해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비영리법인에 운영 위탁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1조
 - 시장은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동의

2 추진 방침

- 수탁자 선정심의회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기존 수탁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로 사업 전문성 및 연계성 확보

3 위탁 개요

○ 위탁기관 현황

기관명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남부 아·보·전	대구북부 아·보·전
수탁법인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한국SOS어린이마을
관할구역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북구
설치일	'00. 10. 26.	'13. 9. 2.	'16. 4. 14.
위탁종료	'19. 3. 24.	'19. 3. 24.	'19. 4. 13.

○ 대상사무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치료 지원
-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
- 운영예산 : 연간 1,870백만원 정도(개소당 623백만원)
 - ※ 위 금액은 대구시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탁기간 : 2019. 3. 25.(2019. 4. 14.) ~ 2023. 12. 31.(5년 이내)
 - ※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재계약 종료기간을 5년 이내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위탁조건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준수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준수
 - 대구시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관리·운영
- 추진절차 : 계획수립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심의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위·수탁 계약 체결

4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3월 중
- 위원회 구성 : 9명 이내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 심의방법
 - 각 수탁법인의 사업계획 발표와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위원별 평가
 - 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재위탁(계약) 적합으로 평가할 경우 재위탁(계약) 결정
 - 수탁법인이 재위탁(계약) 부적합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기관은 별도 공모절차를 통해 수탁자 선정
 - ※ 업무 추진일정이 지연될 경우 재위탁 개시 전까지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

○ 심의내용

- 수탁법인의 적격성(법인 설립목적, 보유자산, 관련사업 실적 등)
- 기관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인력 전문성, 사업 활성화 방안 등)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유관기관 협조 방안, 지역사회자원 동원 등)

○ 제출서류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 법인 정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 우수사례 및 현안사항 등

5 향후 추진일정

-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9. 2. 28.까지
- 시 의회(문화복지위원회) 동의안 심의 : '19. 3월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9. 3월중
- 일상감사 및 계약서 심사(감서관실 법무담당관실) : '19. 3월중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18. 3 ~ 4월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공개 : 2018. 3 ~ 4월

※ 성과평가 : 「아동복지법」에 따라 3년 단위로 평가를 원칙
(「대구광역시민간위탁조례」 제2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함)

- 붙임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서식)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표준계약서(서식)
3. 관련법령

[붙임 2]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13호 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계약서

○○○시·도(또는 ○○시·군·구)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회복지법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위탁자가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도 ○○시, ○○군, ○○구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4. 9.28.까지는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으로 한다)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
6. 지역사회 보건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의뢰
8.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행사 상실 청구 요청(아동복지법 제18조)
9. 후견인이 아동학대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 신청(아동복지법 제19조)
10.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청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다만 특례법이 시행되는 2014. 9.29부터 적용)
11.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00.00까지로 한다.

*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 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 양도 또는 재 위탁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보조 등) ① 위탁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재무 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및 평가)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② 수탁자는 연간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해당 업무 별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평가에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연간 업무수행평가 지표를 공지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인력) ① 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위탁자에게 임면사항을 즉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전문기관의 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문서로 사전협의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전문기관의 소관 업무 및 운영 등(이하 “업무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또는 전문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관리) ① 수탁자는 운영비의 적정한 관리와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붙임 3]

관련 법령

참고 1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참고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3. 삭제 4.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삭제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참고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참고 4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2.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

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경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